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895

발의연월일: 2024. 8. 16.

발 의 자:김 건·이헌승·최수진

엄태영 • 우재준 • 이인선

박성민 · 서일준 · 신동욱

주진우 · 송언석 · 김용태

김기웅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전기자동차의 주요 부품인 배터리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짐. 특히 배터리는 전기자동차의 성능, 안전성, 수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부품으로, 소비자들이 자신이 사용하는 배터리의 제조사 와 품질에 대해 명확히 알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조사 등록에 대한 규정이 없어, 소비자들이 이 정보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자동차등록원부에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제조사를 명확하게 등록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전기자동 차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전기자동차 선택에 도움을 주며, 궁극적으로

는 전기자동차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7조제6항).

법률 제 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9685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제6항 중 "차종, 용도"를 "전기공급원의 제조사와 상품명(「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 한정한다), 차종, 용도"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정 아 개 법률 제19685호 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9685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조(자동차등록원부) ① ~ ⑤ 제7조(자동차등록원부) ① ~ ⑤ (생 략) (현행과 같음) ⑥ 등록원부에는 등록번호, 차 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자동 차 소유자, 원동기형식, 구동축 전지 식별번호(「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 한정한다), 차종, 공급원의 제조사와 상품명 용도, 세부유형, 구조장치 변경 사항, 검사유효기간, 자동차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당권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공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기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 로 한정한다), 차종, 용도----기재사항, 서식 및 기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